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04

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:김교흥·정일영·이성만

윤재갑 • 박상혁 • 유동수

윤미향ㆍ허종식ㆍ정정순

문정복 · 정성호 · 문진석

남인순 · 조응천 · 박찬대

홍영표 • 박성준 • 송영길

윤관석 • 민홍철 • 박홍근

의원(21인)

### 제안이유

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·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, 용적률, 건폐율,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2015년 도입하여운영하고 있음. 그러나 그동안 민간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지정 대상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. 이에 주민 제안 허용,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주민에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함(안 제26조제1항제4호).
- 나.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함(안 제40조의2제1항제6호).
- 다.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「건축법」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(안 제83조의2제1항제 4호).

#### 법률 제 호

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제40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제8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건축법」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6조(도시・군관리계획 입안의 제26조(도시 · 군관리계획 제안) ① 주민(이해관계자를 포 제안) ① -----함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 · 군관리계획을 입안 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・군관 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 다.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・ 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4.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40조의2(입지규제최소구역의 제40조의2(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) ① 제29조에 따른 도 지정 등) ① -----시 ·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(이 하 "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권 자"라 한다)는 도시지역에서 복 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 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

<u><신</u> 설>

### ② ~ ⑧ (생 략)

제83조의2(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저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)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~ ④ (생 략)

,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
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지역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83조의2(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
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) 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4. 「건축법」 제43</u> 조에 따른
공개 공지 등의 확보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